

[별지 제69호서식] <개정 2008.2.26> (앞 쪽)

제 호 검 사 원 증	사 진 (25mm×30mm)
성 명: 생년월일: 주 소: 위 사람은 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 제5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검사원임 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 [인]	

81mm×55mm[보존용지(1종) 120g/m²]

(뒤 쪽)

특 기 사 항

1. 본증 소지자는 수렵면허증 또는 야생동물포획허가증 소지여부, 포획한 야생동물, 박제품 등의 검사업무를 수행합니다.
2. 본증 소지자는 불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당국에 고발하여야 합니다.